

企 業 的 社 會 的 責 任 和 會 社 法

崔 星 根*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성질 및 내용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 2. 기업 사회적 책임의 성질
 - 3. 기업 사회적 책임의 내용
- III. 시대·국가별 기업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서 설
 - 2. 전통적·소유자적 기업관
 - 3. 독립적 기업관 - 기업 자체 사상
 - 4. 제도적 기업관 - 수탁자적 경영자 사상
 - 5. 경영참가적 기업관
 - 6. 사회적 기업관
-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1. 서 설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 3. 기업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의 관계
 -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법상의 제문제
- V. 결 어

* 韓 國 法 制 研 究 院 研 究 委 員, 法 學 博 士

I. 문제의 제기

경제활동이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적인 활동을 말하고, 경제 단계별로 생산, 유통 및 소비로 구분된다. 각각의 경제활동이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전체적인 틀을 전체경제 또는 국민경제라 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전체경제는 어떠한 통일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경제의 단위이자 구성체를 이루는 수많은 개별적인 실체 즉, 개별경제들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운영된다. 개별경제는 크게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기업은 3대 경제활동 중 생산과 유통의 중추기능과 소비의 부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기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고 전체경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이 공동기업 즉, 회사시스템의 효율성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경제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경제의 기업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사회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기업은 사회로부터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 전반의 요구를 고루 수용할 수 없어 비판과 공격을 받게 된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또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부를 늘린다거나 문화·복지의 증진에 출연하는 등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종업원·소비자·지역주민 등과 기업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부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를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구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즉, 기업이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부의 편재라든가 공해, 결함상품, 사고·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유발함에 따라, 일부 범영역에서는 이를 실정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경향을 굳혀가고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 향상, 환경법상 기업·경영자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제조물책임법 등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보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본래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를 촉구하는 사회여론이나 각종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규율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영향력이 근로자·소비자·지역주민은 물론 국가의 정치·문화 등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기업윤리 내지는 도덕적 책임의 수준에 머무를 수 없고 법적 책임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아직은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단계이다.¹⁾ 물론 종래 우리 나라에서 전개되어 있는 논의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시대·국가별 기업관과 연계하여 그간에 제외국에서 전개되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우리의 회사법에서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방향을 제시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한다.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성질 및 내용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부류로 한정한다. 하나는 기업측의 사회적 책임론인데, 이는 단순하게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책임론인데, 이는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공해, 결함상품, 사고·재해 등의 제거·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의 외부로부터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진정한 의미는 기업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실체로서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관하여 고찰한다.

1)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희철 교수의 “주식회사 법리의 사회화 경향”, 『법학』 9권 2호, 서울대학교, 1966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룬 논문이었고, 이후 얼마간 공백기를 보이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논의가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주체와 객체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에 있어서는, 기업이 법인이라면 법인인 기업과 그 기관인 경영자(이사 등)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의 객체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기타 사회 일반이다. 주주 및 채권자는 기업에 대한 자본의 제공자이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인 경우도 다수 있으며, 현행 상법상으로도 이미 상당 수준으로 그 이익보호가 도모되고 있다.²⁾ 기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이익이 침해되는 대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 사회적 약자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들의 이익보호가 과제이며, 국가는 기업보다 우월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객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업 사회적 책임의 성질

(1) 경제적 책임 · 비경제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질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할 수 있는데,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통상 협의로는 경제적 개념과 대립되는 ‘비경제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광의로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의 양자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 그리고 광·협의 두 가지 사회적 책임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먼저 ‘주주를 위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자유주의경제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 Friedma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⁴⁾ 그러나 본래 이윤은 사기업에 대한 시장적 보수로서 ‘사적’인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는 경우의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기업을 초월하여 사회 전체로서의 ‘공적’인 성질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윤을 올

2) 물론 대주주와 이해대립관계에 있고 그 지위의 교체가 불가능한 소수자주주나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채권자는 오히려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과 그 이해가 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할 것이다.

3) 樓井克彦, 現代企業の社會的責任, 千倉書房, 1976, 13頁.

4) M. Friedma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970. 9. 13.

리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사고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질로 값싼 재화·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기업 본래의 경제적 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곧 기업의 비경제적 기능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기업 내지는 경영자가 공급자기능 즉, 경제적 기능의 수행을 명분 삼아 분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것에 더하여 공해, 결함상품, 사고·재해 등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비경제적인 책임도 병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비경제적 개념이라고 단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경제가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의 한계를 벗어난 데서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가격메커니즘의 기능회복 내지는 시장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경쟁정책적 제안을 전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끌어들이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⁵⁾

(2) 도덕적 책임·법률적 책임

경영학적 시각의 논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① 법률적 책임과 그 외의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광의)와 ② 법률적 책임 이외의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협의)가 있다. 그리고 경영학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론은 일반적으로 도덕론 내지는 경영이념론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묻는데 보다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3. 기업 사회적 책임의 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통상 ① 사회적 의무(social obligation)와 ② 서비스 책임(service responsibility)의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⁶⁾

먼저 사회적 의무는 이것이 적극적 의무인가 아니면 소극적 의무인가가 문

5) 中村一彦, 企業の社會的責任 - 法學的 考察 -, 同文館, 1981, 156~157頁; 三枝一雄, “企業の社會的責任について”, 明治大學法學部 創立100周年 記念論文集, 1980, 196頁.

6) 中村一彦, 企業の社會的責任と會社法, 信山社, 1997, 5~6頁.

제될 수 있다. 경영학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침해 자체에 유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촉진에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법학에서도 기업의 권력남용이라든가 경영자 재량권의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는 차원의 소극적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론·입법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적극적 의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적 의무는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조례, 공해방지협정, 기업의 행동강령 등에 의하여 제시된다.

다음으로 서비스 책임의 예로는 사회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행위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적 책임으로 다루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적 의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회사의 권리능력범위내인가 또는 경영자의 재량판단 범위내인가로 문제가 한정된다.

Ⅲ. 시대·국가별 기업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서 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다양·다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영자의 자각이라든가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공해, 결함상품, 사고·재해 등의 제거·방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법률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범위를 한정한다. 그리고 ‘사회’라는 용어는 당해 기업 이외의 일체의 사회적 실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채권자·종업원·소비자·지역주민 기타 사회 일반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독일에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형태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기업 자체(Unternehmen an sich) 사상이 소개된 바 있고, 근래에는 근로자의 공동결정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법(Unternehmensrecht)’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공동결정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참가하는 기업조직을 인정할 것인가 즉, 근로자인 종업원을 기업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검토 과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 경우에는 견해를 주장하는 자의 기업에 관한

사실인식이라든가 평가 등 이른바 기업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Berle 교수와 Dodd 교수의 논쟁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고, 최근에는 ‘기업의 법적 환경(legal environment of busines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집단은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등으로 다채로우며 광범위한 고찰이 행해지고 있다. 기업과 그것을 둘러싼 다원적 이익의 조정문제도 역시 이를 논하는 자의 기업관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통상 법학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는 논자가 특별하게 기업관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다수의 경우 구체적인 해석론·입법론 중에서 기업관을 추측할 따름이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와 함께 가치관의 다양화가 예상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관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⁷⁾

2. 전통적·소유자적 기업관

전통적으로 회사는 개인들의 집합체(a collection of individuals)이지만 법률상 하나의 실체(an entity)로서 취급되어 왔다. 이 경우 회사의 구성원으로는 당연히 출자자로서의 주주만이 고려된다. 이러한 기업관에 의하면, 주주는 회사의 공동소유자로서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외에 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주주가 공동경영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⁸⁾

이러한 전통적·소유자적 기업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업관이라고 할 것이다. 2차세계대전 전에 독일의 상법학자 Haussmann은 회사 특히 주식회사는 주주에 의한 사적 소유의 형태라는 전제하에, 주식회사의 기본구조는 그 존재목적(Daseinszweck)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그 제1의 목적은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⁹⁾ 또한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는 시대·국가별 기업관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 이유에서 中村一彦 교수가 그간의 논의의 전개를 시대·국가별 기업관의 변천과 연계시켜 분석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탁월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동 교수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中村一彦, 前掲書, 16~25頁 참조.

8) 鈴木竹雄, 新版會社法, 弘文堂, 1982, 28頁.

9) F. Haussmann, "Gesellschaftsinteresse und Interessenpolitik in der Akti-

독일의 상법학자 Köhler도 회사법(Gesellschaftsrecht)은 기업의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사적인 법적 거래 차원에서 규율하는데 대하여 기업체제법(Unternehmensverfassungsrecht)은 경제체제의 급부단위로서의 기업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전자는 이익일원적(interessenmonistisch)인데 대하여 후자는 이익다원적(interessenpluralistisch)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¹⁰⁾ 이러한 견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 중에 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주식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이익의 충돌은 회사의 내부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주주의 이익을 초월하는 초개인적인 공공적·사회적 이익의 차원에서 조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주만을 기업의 소유자로 보는 이익일원적 견해는 회사법의 사법적 순수성을 관철하면서 상법과 경제법을 본질적으로 엄격히 구별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Köhler 교수는 회사법은 이익일원적인데 대하여 기업체제법은 이익다원적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회사법과 회사체제법을 법이론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¹²⁾

그러나 상법과 경제법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독일의 상법학자 Mestmäcker는 Köhler 교수를 비판하여, 경쟁질서(Wettbewerbsordnung)는 고도로 발달된 사법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법들은 그 효과를 직접 경제질서(Wirtschaftsordnung)로부터 취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¹³⁾¹⁴⁾

engesellschaft”, Bank-Archiv. 30. Jahrgang, 1930, s. 60; 大隅健一郎, 會社法の諸問題, 有信堂, 1983, 58頁.

10) H. W. Köhler, “Unternehmensverfassung und Aktienrechtsform”, J. Z. 3. 15, 1956, s. 139.

11) Ibid.

12) 일본의 鈴木竹雄 교수도 상법은 기업을 둘러싼 경제주체들간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경제법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상법이 횡적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데 대하여 경제법은 종적 관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며, 횡의 주식회사법에 종의 관계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동일하게 평면적으로 병립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鈴木竹雄, “歴史はくりすえす”, ジュリスト 578號, 1975, 10頁.

13) E. J. Mestmäcker, Verwaltung, Konzerngewalt und Rechte der Aktionäre, 1958, s. 36.

14) 일본에서도 상법과 경제법의 엄격한 구별을 반대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예컨대, 西原實一 교수는 경제법은 한편으로 상법과는 도저히 융합하기 어려운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대상을 전혀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상법의 내부에서 사회적 원

전통적·소유자적 기업관에 기초한 상법과 경제법의 엄격한 구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특히 비판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이론은 경제법의 진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상법중립론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상법학의 임무를 자기한정시키고 특수문제에 대한 전문화·세분화를 꺼리며 사회·공공과 관련한 문제를 백안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3. 독립적 기업관 - 기업 자체 사상

1920년대 독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기업이론으로 ‘기업 자체(Unternehmen an sich) 사상’이 있다. 이 이론은 기업은 종업원, 소비자 등의 제 이익이 사회학적으로 일체로서 융합되어 이른바 영조물화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법익으로서의 특수한 보호를 요한다는 법사상이다. 이른바 ‘독립적 기업관’으로 불리우는 이론이다. 그 대표자가 Netter 교수인데, 그는 주식회사를 사적 이익의 통합체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공공적 요소도 포함하는 다원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1937년 주식법은 제70조제1항에서 ‘이사는 자기의 책임으로 기업과 종업원의 복지 및 국가·국민의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¹⁶⁾

기업 자체 사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유발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기업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집단의 목표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대주주나 경영자의 이기적인 시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¹⁷⁾ 그러므로 2차 대전 후 독일에서는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논의가 되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리의 내부적 발전을 인정한다면 경제법과 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西原寬一, 日本商法論 1卷, 日本評論社, 1950, 67頁 이하; 大隅健一郎, 前掲書, 464頁; 松田二郎, “會社の社會的責任について - 商法改正の問題として”, 商事法務 713號, 1975, 25頁.

15) 大隅健一郎, 前掲書, 449頁 이하.

16) 이 규정은 당시 나치정권하에서 풍미하던 전체국가적 단체법사상에 기초한 지도자이념(Führerprinzip)이라고 비난받아 1965년의 주식법에서 삭제되었다,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60면 참조.

17) 中村一彦, 企業の社會的責任 - 法學的 考察 -, 前掲書, 80頁.

4. 제도적 기업관 - 수탁자적 경영자 사상

‘경영자는 누구를 위한 수탁자인가’에 관한 미국의 학설은 Berle 교수와 Dodd 교수의 논쟁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먼저 Berle 교수가 1931년 작성한 ‘신탁상의 권한으로서의 회사권한(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이라는 논문에서 ‘경영자는 법률과 정관에서 부여된 권한을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¹⁸⁾

이에 대하여 Dodd 교수는 ‘경영자는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공공적 의무(public duty) 내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부담한다. 경영자는 어디까지나 주주의 수탁자이지만, 회사의 재산은 주주가 출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재산과는 달리 한정적 의미(qualified sense)에서만 주주의 사유재산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회의 진보와 병행하여 회사는 여론의 동향에 좇아 사회적으로 기능화되고 경영자는 비영리적 공익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론을 폈다.¹⁹⁾

이에 대하여 Berle 교수는 ‘회사는 주주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며, 만일 경영자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약화된다면 회사의 지배자인 경영자는 이를 제어할 것이 없는 절대자가 되어버린다’ 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였다.²⁰⁾ 그러나 Berle 교수도 Means 교수와 1932년 공동으로 발간한 ‘현대 회사와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에서는 ‘사회적 의무에 관한 확고한 제도(a convincing system of community obligation)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는 사회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양보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회사의 경영자가 공정한 임금·종업원의 보전·공중에 대한 합리적인 서비스·사업의 안정화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는 때에는, 이러한 모두는 결과적으로 주주로부터 이윤의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되지만, 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산업상 애로사항의 이론적·인간적 해결수단으로 승인하려 한다면 주주의 이익은 이에 승복하여야 한

18) A.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Harv. L. Rev. vol. 44, 1931, p.1049 et seq..

19) E. M. Dodd,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Harv. L. Rev. vol. 45, 1932, p.1145 et seq..

20) A. A. Berle,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A Note”, Harv. L. Rev. vol. 45, 1932, p.1365 et seq..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²¹⁾ 그 후 Berle는 195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생각을 보다 발전시켜 경영자는 '회사의 양심(conscience of corporation)' 또는 '공공의 양식(public consensus)'에 좇아 공익지향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시켰다.²²⁾

그 외에도 미국 기업의 경영자 중에는 경영자는 사회전체를 위하여 신탁된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사장이었던 O. D. Young은 '경영자는 이미 주주의 대리인이 아니라 제도(institution)의 수탁자가 되어 왔다. ...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3개의 집단이 존재한다. 하나는 회사에 자본을 제공한 5만의 주주의 집단이다. 둘은 회사의 영업에 노동과 생활을 맡기고 있는 10만의 집단이다. 제3의 집단은 소비자와 일반대중의 집단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²³⁾

이러한 견해는 경영자가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이나 소비자 등의 수탁자 또는 제도의 수탁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일용 '제도적 기업관'이라고 불리우며,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폭넓게 지지되고 있다.²⁴⁾ 제도적 기업관에 의하면 경영자가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각종 집단의 이해를 다원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해된다.²⁵⁾ 다만,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영자의 이해조정책임을 경영자의 자유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경영참가적 기업관

근로자 측, 종업원의 경영참가가 현재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1951년 공동결정법, 1952년 경영조직법(1972년 개정) 및 1956년의 공동결정보충법(1976년 개정)을 제정한 바 있고, 특히 1976년에 제정한 신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MitbestG)은 종업원 2,000인을 초과하는 기

21) A. A. Berle, Jr. and G.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 p.356.

22) A. A. Berle, Jr., *The 20th Century Capitalist Revolution*, 1954, p.61 et seq.; A. A. Berle, Jr., *Power without Property*, 1959, p.111.

23) E. M. Dodd, op. cit., pp.1154~1155.

24) 제도적 기업관은 일본의 경영학계에서도 통설적 견해이고 또 일본 상법학회에서도 동조자가 있다고 한다, 大隅 健一郎, 前掲書, 462頁.

25) 櫻井克彦, "企業權力と社會的責任", *經營と經濟* 52卷 2號, 1972, 57頁; 對木隆英, "企業の社會的責任-その生成と内容", *成蹊大學經濟學部 論集* 3卷 1號, 1972, 144頁.

업의 감사회(Aufsichtsrat)에 근로자와 자본가가 대등한 입장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단체교섭을 중시해 온 영국에서는 1978년 노동당정부가 정부백서를 공표하여 정책결정이사회(policy board)와 업무집행이사회(management board)로 이사회를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종업원 대표를 전자에 참가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후 영국에서는 1979년 보수당정권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식되었다. 기업이익참가제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에서도 1975년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3분의 1까지 종업원을 참가하도록 하는 구상이 발표된 바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는 유럽회사법안의 영향을 받아 이사회 또는 감사회의 종업원참가, 근로자중역제 등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근로자의 지위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²⁶⁾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중시하는 경영참가적 기업관에 있어서는, 종업원은 과연 기업조직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가가 문제된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란 자본과 노동의 통일적 조직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잡혀 있고, 이에 기초하여 종업원의 경영참가가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법률중에도 반영되어 있다.²⁷⁾ 독일에서의 공동결정사상은 노동운동과 역사를 같이 할 만큼 오래된 것인데, 그 사상중에는 공동체정신이 관류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그리스도교의 카톨릭파나 복음주의파에는 경영에 있어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이익공동체(Interessengemeinschaft)라는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었다.²⁸⁾ 2차세계대전후 종업원의 공동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법의 틀을 뛰어 넘는 기업법 논의가 활발하였다. Schilling 교수에 의하면 기업이란 ‘자본(지분소유자)[Kapital(Anteilseigner)], 노동(종업원)[Arbeit(Belegschaft)], 기업가사상(업무지휘자)[unternehmerisch Wille (Geschäftsleitung)]의 지속적인 결합체(Vereinigung)’라고 한다.²⁹⁾ Kunze 교수도 기업은 지분소유자(Anteilseigner), 피용자(Arbeitnehmer)

26)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상사법연구』 19권 1호, 2000, 172~174면; 박지순,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노동정책연구』, 2000. 11, 107~126면; 대한상공회의소, 『독일의 근로자경영참여제도 분석』, 2003. 7 등 참조.

27) 山口俊夫, “フランスにおける‘企業enterprise’概念の歴史的沿革”, 現代商法學の課題(下) 鈴木竹雄先生古稀記念, 有斐閣, 1975, 1673頁 이하 참조.

28) 二神恭, 西ドイツ企業論, 東洋經濟新報社, 1981, 9頁.

29) W. Schilling, “Das Aktienunternehmen”, Z. H. R. Bd. 144, 1980, s. 137.

및 기업지휘자(Unternehmensleiter)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³⁰⁾ 영국의 Schmitthoff 교수는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윤극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단으로서의 기업(the enterprise as instrument of a new social order)이며, 경제단위로서의 회사는 주주, 종업원, 일반공중 등 제이익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폭넓게 승인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¹⁾

종업원을 기업이라고 하는 결합체의 구성원으로 보거나 통일적 조직체의 일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법이론상 타당한가? 거대화된 주식회사 기업의 존재 및 활동이 다원적 제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는 기업을 소유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 즉, 기업에 있어서의 소유와 경영은 함께 자본측에 독점되어 있고, 근로자인 종업원은 기업 외의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전제로 현행의 회사법도 노동법도 구성되어 있다.³²⁾ 우리 나라에는 유럽과 같이 기업을 주주와 종업원의 이익을 구현한 통일체로서 보는 현실상황도 아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종업원을 기업의 일원으로 고려하는 경영참가적 기업관에 서는 경우 종업원도 공동결정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단체교섭권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 옹호의 방패막이로 될 우려도 있다.

6. 사회적 기업관

일본의 경영사회학자인 富永健一교수는 현대의 기업 특히 대기업은 그 자신이 일정한 규모와 일정한 메카니즘을 갖춘 ‘하나의 시스템(체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업과 사회’라고 할 때의 ‘사회’는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에 대하여 보다 상위의 시스템으로서 ‘전체 사회체계(구체적으로는 국가사회와 그것의 일부로서의 지역사회)’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사회의 하나의 구성요소 즉, 하위 체계로서 고도산업사회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적 기업도 전체 사회체

30) O. Kunze, “Zum Stand der Entwicklung des Unternehmensrechts”, Z. H. R. Bd. 144, 1980, s. 105.

31) C. M. Schmitthoff, Commercial Law in a Changing Economic Climate, 1977, pp.18~19.

32) 종업원을 주주와 함께 기업의 구성원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종래의 고전시민법적 구성을 무너뜨리는 성격의 것임은 물론 ‘시민법으로부터 사회법으로’라고 하는 틀을 흐트러뜨리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松岡正美, “經營參加”, 上柳克郎·河本一郎 編, 企業・經營と法, 有斐閣, 1983, 60頁.

계의 하나의 하위체계로서 공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적 기업은 그 자체가 단독으로 존립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인 자립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적 기업과 공적 사회는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적 임무수행과 공적 임무수행에 동시에 따른다고 하는 이중성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이와 같은 이중성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하위체계로서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위체계인 지역주민 내지는 국민 사회 전반으로부터 일정한 규범적 기준에 의한 제재가 가해진다.³³⁾

일본의 상법학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견해들이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의한 사적 소유의 형태이지만 최근 공익 내지는 다원적 이익관계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주식회사 기업의 사적 영리 추구라는 측면과 공익 내지는 다원적 이익관계성이라는 측면간의 모순 또는 대항의 격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 타당한 조정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라는 견해라든가,³⁴⁾ 회사법은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 투자자, 종업원 등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최고의 목표는 배후에 있는 사회 전체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견해³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업관을 ‘사회적 기업관’이라고 한다.

사회적 기업관의 골자는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주주에 의한 사적 소유의 형태인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행동에 대한 제약원리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관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이 상법과 동질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지만, 공정거래법도 기업 일반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또 민법의 공공복리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의 원칙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사법관계 일반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과 체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소비자보호법도 노동법도 상법과 결코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국법질서일원론).³⁶⁾

사회적 기업관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자의 이해조정책임으

33) 富永健一, “‘經營と社會’の基礎理論”, 富永健一 編, 經營と社會, 다이iamond社, 1971, 3頁 이하.

34) 新山雄三, “株式會社法と企業の社會的責任”, 法律時報 46卷 9號, 1974, 37頁.

35) 田中誠二, “會社法學の新傾向とその評價”, 田中誠二 外 編, 會社法の新傾向と評價, 千倉書房, 1978, 20頁 이하.

36) 中村一彦, 企業の社會的責任と會社法, 前掲書, 24頁.

로 이해하는 경영학의 통설적 견해보다 경영자는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Petit 교수의 역할기대이론³⁷⁾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조직을 권한의 체계로 보고 경영권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데 대하여, 후자는 직무의 사회성 즉, 직무 그 자체의 대외기능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관과 관련해서는 기업 외부로부터 일정한 규범적 기준에 비추어 제재를 가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지는 이상 회사의 내부에서의 기구·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³⁸⁾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회성 내지 공공성은 기업이 사회적 존재인 한 본래 그것에 내재한다는 인식에 서는 것이므로 기업 내에 사회로부터의 체크기능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 서 설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말 경제위기로 경제가 붕괴되고 기업의 연쇄도산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사태가 유발된데는 주주총회·이사회·이사·감사 등의 제제도가 무력화되고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론의 원류는 전술한 Berle 교수와 Means 교수의 공저인 ‘현대 주식회사와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중의 회사 실증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Berle 교수와 Means 교수는 이 저서에서 미국 대기업에서 경제력의 집중, 주식소유의 분산 및 소유와 지배의 분리가 행해진 결과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가 확립되어 있는 것을 논증하였다. 즉, 미국 대기업에서는 회사가 ‘누구의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회사를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현상진단은 단지 경영자지배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의 해명에 그치지 아니하고 집중된 경제력과 경영자의 권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옮겨갔다.

37) T. A. Petit, *The Moral Crisis in Management*, 1967, p.72 et seq..

38) 河本一郎, “企業의 社會的 責任 - 法學的 考察”, *ジュリスト* 578號, 1975, 109頁.

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32년 Berle 교수와 Dodd 교수의 논쟁 중에서도이다. 즉, ‘회사의 경영자는 누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가(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에 관한 이들의 논쟁중에 경영자는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공적 의무(public duty) 내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부담한다는 사상이 제시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있어서 중심문제는 회사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이외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다.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내지는 경영자지배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으로 발전하였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³⁹⁾ 이를 사회적 책임론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배구조론에 있어서는 ‘회사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회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기업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의 관계

대기업에 있어서는 주주 이외에도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 기업활동에 깊은 ‘이해관계(stake)’를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자를 ‘주주(stockholder)’에 대비하여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 부르고, 회사 내지는 경영자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기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고가 최근 각국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⁴⁰⁾

이 문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지배구조론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질화 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지 경

39) 奥島孝康, 會社法の基礎, 日本評論社, 1994, 60頁.

40) M. A. Eisenberg, 竹原隆信 譯, “アメリカ會社法學者からみた問題點”, 民商法雜誌 108卷 4・5號, 1993, 19頁; 宮本惇夫, 企業市民, 日本能率協會, 1991, 15頁; 松岡紀雄, 企業市民時代, 日本經濟新聞社, 1992, 160頁.

영자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신이 회사경영을 사회적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체크하는 담당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회적 지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회사법상의 제문제

(1) 기업지배구조를 담당하는 자로서의 주주

미국에서는 기관투자가 중 특히 공적 연금기금(public pension fund)이 그 자산운용을 위하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지배구조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⁴¹⁾ 그러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미국형 기관투자자의 활약은 현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시민단체가 주동이 된 시민과주주의 활동이다.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는 종래 기업가주주, 투자주주 및 투기주주로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대주주와 소수자주주로 나뉘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시민과주주들은 종업원, 소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이익 등 이른바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제약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태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질문권이나 제안권을 행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하고 있다.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는 사회적 존재이고 그것에 부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같은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운영의 공정·적절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는 충실의무는 당연히 이사의 사회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41) 水口宏, “經營コントロールに關する株式市場と機關投資家の役割”, *ジュリスト* 105號, 1994, 101頁.

다. 즉, 이사는 법령 및 정관의 규정과 함께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⁴²⁾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는 충실의무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만일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종업원, 지역주민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한 이사의 사회적 책임 규정은 이미 미국의 다수의 주의 회사법에서 입법화되어 있다.⁴³⁾

(3) 이사회, 감사제도 등의 개혁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회사조직의 중핵인 이사회 또는 감사제도에 사회적 관점을 구축하여 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로 구성되고, 사외이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임원 등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사내이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최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차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사회 또는 감사제도에 대하여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 이른바 이해관계자를 참가시킬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가한다면 그 경영참가기능은 강력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주주대표인 이사와 함께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이 된다면 오히려 경영외에서 경영에 대하여 체크하는 방법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업원의 이사회 또는 감사제도에의 참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미 독일에서 실현되고(1976년 공동결정법) EU제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체크시스템으로서의 기업지배구조가 완성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비자나 지역주민의 참가와의 조합이 불가결하다고 할

42) 中村一郎, 企業の社會的責任と會社法, 前掲書, 9~10頁 참조.

43) C. Hansen, "Other Constituency Statutes: A Search for Perspective", The Business Lawyer vol. 46, 1991, pp.1355~1376.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 일체에 의한 ‘생산자 이기주의’의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 기업정보의 공시

적절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그것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다. ① 회사에 의한 정보의 공시(disclosure), ② 공시에 기초한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및 ③ 회사행동의 수정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회사경영의 공정·적절성을 기대할 수 있다. 회사내용의 공시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회사법상 주주와 채권자이고,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이와 함께 주주·채권자로 될 자 즉, 일반투자자이지만, 종업원·소비자·지역주민 등 사회 일반에 대해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 집중을 제한하려는 과거로부터의 시도가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실질화시키려는 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주목받는 시도의 하나가 공시제도 특히 증권공시(securities disclosures)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투명성(social transparency)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실질화하자는 제안이다.⁴⁴⁾

V. 결 어

오늘날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기업사회, 그것도 대기업관리사회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획득하고 그 유지·발전에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 한편 부의 편재라든가 공해, 결함상품, 사고·재해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유발하므로 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는 이제 공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는 그 초점이 추상적인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모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장은 피상적인 차이들에

44) C. A. William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Corporate Social Transparency, Harv. L. Rev.112, 1999, p.1197 et seq.; C. A. Harwell Wells, “The Cyc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Historical Retrospectiv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an. L. Rew. 51, 2002, pp.134~136.

도 불구하고 매우 닮은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으로는 ① 기업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문제점들은 대규모 공개회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제점들임을 전제한 점, ② 이러한 회사들을 제거하기보다는 개선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점 및 ③ 주주가 아닌 보다 넓은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사 및 임원으로 하여금 주주 이외의 비주주 구성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자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구체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현행의 법체계내에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의 법체계는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영역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기저에 깔고 있는 법이념이 상이한 만큼, 모든 범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그러므로 각각의 범영역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책임형태로 입법에 반영할 것인가 또는 해석상의 지도원리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에의 반영 또는 해석상 지도원리로의 채택을 결정하였다면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는 형식과 내용은 해당 범영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법 즉, 상법의 경우를 본다면,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시대에는 정부와 법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개인의 재산·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과 기업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이 전부였다. 이후 합리적인 시스템에 기초하여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영향력을 제어하거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하여 상법의 특별법으로 노동법·사회법·경제법·환경법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법의 발달사를 보면 기업의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이 사회관계를 포섭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범영역을 창설하여 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법이 기업의 생성·유지·발전·강화 및 거래의 안전을 지향하면서 기업관계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법으로 존속하도록 하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컨대 회사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책임형태로 입법에 반영하거나 법적 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지도원리로 삼는 것은 회사법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고 상법 이외에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여

타 법들이 포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회사법은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니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무관한 영역으로 남을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통상 기업의 영향력을 제어하거나 기업이 발생시킨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담지우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회사법은 기업이 사후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실천방법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주효할 것이라고 본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ion Law

Choi, Seong-Keun*

On the one hand corporations have promoted social wealth on the basis of their efficient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y have produced unfavorable side effects to the society. Nowadays injuries or wrongdoings caused by corporations are ever increasing and this calls for legal regulations. The ter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uld be used in ethical or moral as well as legal. And it is true that the mor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actu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this paper focuses on legal debates o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exiting legal debates o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ve deep similarities despite superficial differences. Almost all the separate debates have (1) presupposed that the problems created by corporation are really problems created by large publicly held corporations, (2) aimed to reform those corporations rather than to eliminate them, and (3) seen the imposition of new duties towards nonshareholder constituents on directors and officers as the best way to make corporations answerable not just to shareholders but to the wider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ebates ove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have been developed in foreign countries and puts forth some opinions how Korean Corporation Law should accomodat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 D in law